- 대구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6385

제출년월일 : 2022. 9. 2.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1. 제안이유

2022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대구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의료기관 중 공개경쟁을 통해 재위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대구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설치·운영 등)
-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대구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등의 설치 및 운영)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사무 기준), 제5조(위탁사무 대상), 제11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 필요성

- 최근 기후변화, 도시화, 인구이동 등으로 사스, 신종 인플루엔자, 메르스, 코로나19 등과 같은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전문적인 감염병 관리·대응체계 및 맞춤형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전략이 필요
- 지역 내 감염병 발생 동향 감시 및 분석을 통해 유행 양상을 사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역 내 감염병 전파 차단
-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을 지원하고, 지역 내 감염병 발생 감시·분석, 역학조사, 교육·홍보 등 감염병 관리 수요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위탁범위 : 대구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관리·운영 전반

○ 위탁사무

- (기획) 지역 특성에 맞는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 (감시) 감염병 발생 감시·분석 및 정보 환류
- (역학조사) 현장 역학조사 지원, 기술지원 및 자문
- (교육·훈련) 지역사회 감염병 대비·대응 역량강화
- 지역사회 감염병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감염병 위기 시 즉각 대응조직 전환 및 대응 업무 수행
- 그 밖에 대구광역시 및 질병관리청이 필요시 요청하는 업무 지원 등

라. 위탁운영 개요

○ 위　　치 : 시 청사 내부 설치 원칙(부득이한 경우 인접 위치 설치)

○ 조직 및 인력 : 지원단장을 주축으로 상황에 맞게 조직 및 업무분장

- 지원단장은 예방의학 또는 감염내과 등 감염병 분야 전문가 위촉
- 단장 포함 8인 이상 권고, 상근직 인력은 6인 이상으로 구성

○ 상세 운영규정은 질병관리청 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운영지침 준용

마. 민간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 1차 수탁기간 : 2017. 9. 1. ~ 2019. 12. 31.(경북대학교병원)

※ 2차 수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경북대학교병원)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

사. 소요예산

○ 민간위탁금 : '22년 기준 600,000천원(국비 50%, 시비 50%)

* 질병관리청 및 대구시 지원기준에 따라 변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나.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붙임 2

붙임 1

관 련 법 령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①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설치 · 운영 등)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중앙감염병사업지원기구를,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에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 감염병사업지원기구를 둔다.

② 중앙감염병사업지원기구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한다.

1. 「의료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감염병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감염병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역학조사 및 방역 분야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관리사업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중앙감염병사업지원기구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앙감염병사업지원기구는 매 반기별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동현황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질병관리청장은 중앙감염병사업지원기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료수집, 조사, 분석 및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국내외 협력사업의 추진에 따른 여비 및 수당 등의 경비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감염병사업지원기구의 설치 ·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⑦ 시 · 도감염병사업지원기구의 구성원 위촉, 자료제출 요청, 활동현황 보고 및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로, "중앙감염병사업지원기구"는 "시·도감염병사업지원기구"로 본다.

다.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대구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의 시행과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대구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 및 감염병관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감염병 분석 및 관리정책 개발
2. 감염병 예방·관리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보급 및 홍보
3. 감염병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4. 국내외 감염병 발생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5.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
6. 감염병 역학조사 실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사무의 기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제5조(위탁사무의 대상)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환경 기초시설 운영, 폐수·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무
4.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체육·공원시설 등 시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직업훈련·교통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11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지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재위탁, 재계약 및 제17조제5호 단서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탁할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붙임 2

- 대구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

민간위탁(재위탁) 추진 계획

➢ 「대구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의 위탁기간 만료('22.12.31.)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지역 맞춤형 감염병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감염병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전문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및 제12조
○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6조

Ⅱ 목적 및 필요성

○ 최근 기후변화, 도시화, 인구이동 등으로 사스, 신종 인플루엔자, 메르스, 코로나19 등과 같은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전문적인 감염병 관리·대응체계 및 맞춤형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전략이 필요

○ 지역 내 감염병 발생 동향 감시 및 분석을 통해 유행 양상을 사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역 내 감염병 전파 차단

○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을 지원하고, 지역 내 감염병 발생 감시·분석, 역학조사, 교육·홍보 등 감염병 관리 수요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Ⅲ 추진 방향

○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증진을 위해 '민간위탁'(재위탁) 추진

○ 공개모집 및「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구성·운영으로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객관성·공정성·투명성 확보

○ 경쟁체제 도입으로 사업의 내실화, 경영의 효율성 도모

Ⅳ 민간위탁(재위탁) 개요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8조 제2항 : 민간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그간 민간위탁 연혁 >

- '17. 7. 14.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 '17. 9. 1. ~ '19. 12. 31. : 최초위탁(2년4개월/ 경북대학교병원/ 공모)
- '19. 9. 20. : 시의회 재위탁 보고
- '20. 1. 1. ~ '22. 12. 31. : 재위탁(3년/ 경북대학교병원/ 공모)

□ **위탁방법 :** 공개모집(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 결정)

□ **위탁범위 :** 대구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관리·운영 전반

○ **평상시 업무('관심' 단계)**

- **(기획)** 지역 특성에 맞는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 감염병 기본계획에 따른 지자체 시행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 지역 특성에 맞는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전략 수립 및 지역사회 적용
- **(감시)** 감염병 발생 감시·분석 및 정보 환류
  · 국·내외 감염병 발생 정보 모니터링 및 공유
  ·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 현황 감시·분석 및 공유(주간소식지 발행 등) 등
- **(역학조사)** 현장 역학조사 지원, 기술지원 및 자문, 유행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 검토 등

- **(교육·훈련)** 지역사회 감염병 대비·대응 역량강화
  · 지자체 감염병 담당자 상·하반기 교육 실시
  · 지역 내 감염병 취약 집단 맞춤형 교육
  ·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및 생물테러대비 훈련 지원
  · 내부역량 향상을 통한 지원단 인력 전문성 강화
- **(지역사회 감염병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감염병 유행, 위기상황 발생 시 대비·대응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감염병 관련기관 실무 협의체 등 지역사회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운영
- 그 밖에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시·도(시·군·구) 및 질병관리청이 필요시 요청하는 업무 지원 등

❍ **감염병 위기 시('주의' 단계 이상)**

- 감염병 경보 수준이 '주의' 단계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단은 즉각 대응조직으로 전환하여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및 질병관리청(권역질병대응센터)의 업무를 지원함
  · 환자 및 접촉자관리, 시·도 긴급 상황 시 업무 지원
  · 시·도(시·군·구) 현장 역학조사 지원
  · 그 밖에 시·도(시·군·구) 및 질병관리청이 필요시 요청하는 업무 지원 등

▢ 위탁비용(안)

❍ '22년 위탁운영비 : 600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시도감염병관리지원단운영 국고보조액에 따라 지원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 現 대구시감염병관리지원단 현황 >

◦ 위탁기간 : 2017.9.1. ~ 2022. 12. 31.(5년 4개월)
◦ 위탁기관 : 경북대학교병원
◦ 설치장소 : 중구 동덕로 115(삼덕동2가, 진석타워) 5층
◦ 구성인력 : 11명[비상근 2명(단장, 부단장), 상근 9명]
◦ 주요사업
- 감염병 발생 감시·분석 및 정보 환류, 역학조사 지원 및 자문
-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등
◦ 예산지원 : 금600백만원(국비 50%, 시비 50%)/ 2022년 기준

Ⅴ 세부추진계획

1 위탁 추진절차

의회 동의 (제295회 정례회)	수탁기관 모집공고	수탁기관 선정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계약서 심사	민간위탁 협약체결
'22. 9월	'22.10월 (15일 이상)	'22.11월	'22.11월	'22.12월

2 수탁기관 모집

▢ 모집 공고

○ 공고기간 : '22. 10월중(15일 이상)

▸ 2개 기관 이상 공모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공고(5일 이상), 재공고시에도 2개 기관이상 공모에 응하지 않을 경우 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적격여부 판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준용

○ 공고방법 : 공보 및 시 홈페이지 및 게재

○ 공 고 문 : <붙임1> 참고

▢ 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 신청기관의 주사무소가 대구광역시에 소재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써, 신종감염병 등 환자관리, 감염병 관리체계, 감염병 관련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기술 등 경력을 보유한 의료기관

▢ 수탁 조건

○ 매년 정액으로 지원되는 운영비 외에 추가 지원 없이 대구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법인

○ 질병관리본부 시도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지침에 따라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조직, 인력, 예산 및 회계, 사업내용 등)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 민간위탁 계약기간 중 위탁사무에 고용된 종사자의 고용유지 및 고용승계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및 제출내용 미이행 시 계약해지 가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준수

○ 기타 관리·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위·수탁 협약으로 정함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2. 10월 중

○ 접수방법 : 방문접수(인터넷, 팩스, 우편(택배포함) 접수 불가)

○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정책팀

○ 제출서류

① 대구광역시 사무위탁신청서
②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③ 총괄책임자(예정자)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④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계획 요약서 및 운영계획서
⑤ 회계감사, 위탁사무 처리결과 감사, 성과평가결과
(최근 3년이내 시의 민간위탁을 수행한 경우 제출)
⑥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⑦ 종사자 계속고용계약 확약서
⑧ 기타 사업계획 실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⑨ 서약서 및 위임장(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시)
⑩ 공고일 이후 발급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⑪ 발표 PT자료(※별도 제출가능)

3 수탁기관 선정

▢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 관련규정 :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4조~제16조

○ 위원회 구성 : 6~9명(위원장 포함)

- 위원장 :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
- 위 원 : 보건의료분야 대학교수, 보건의료기관 등 관련분야 전문가 등

○ 위원선정 : 공개모집 및 추천

○ 위원임기 : 임명 또는 위촉된 날로부터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수탁기관 선정한 날까지 함(※안건 심의 종료시 자동 해촉)

□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22. 11월중 / 미정

○ 평가방법 : 서류 및 발표(PT) 평가 후 적격자 선정

○ 심사기준(안)

심사항목	세부 심사기준	배점
사업추진의 적합성 (20점)	○ 기관의 사업 수행에 대한 추진 의지	10
	○ 기관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 조직, 재정 등 적합성	10
사업수행의 전문성 (20점)	○ 지원단장의 사업 수행경력 및 역량	10
	○ 감염병관리사업 수행실적 및 사업 수행의 전문성	10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절성 (55점)	○ 사업 이해도 및 목표의 타당성	10
	○ 추진체계 및 전략, 조직구성의 적절성	5
	○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10
	○ 사업 추진일정의 적절성	10
	○ 사업 참여인력 및 분과별 수행인력의 적절성	10
	○ 세부항목별 예산 편성의 적절성	10
근로조건보호 (2점)	○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노력성 - 고용승계 및 유지, 합리적 임금체계, 취약계층 채용, 노동관계법령 준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1
	○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	1
안전관리능력 (3점)	○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구비	2
	○ 재해대응체계 현황, 안전교육 및 훈련실적	1
	○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0 (해당시 감점 -1)
합 계		100

○ 수탁기관 선정

- 심사위원별 평가항목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 산술평균한 점수를 산출하여 최고 득점기관 선정.(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하고 심의결과 70점 이상인 기관을 적격대상으로 선정)

- 최고 득점자가 동점일 경우 ①사업추진의 적합성 ②사업수행의 전문성 ③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절성 ④근로조건보호 및 안전관리능력 득점 순으로 수탁기관 선정
- 응모기관이 1개일 경우는 신청기관의 적격여부만 심사, 총점이 70점 이상일 경우만 적격처리

☐ 선정발표

○ 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 제출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후에도 취소 가능

4 사업협약 체결

☐ 사업계획 협의

○ 적격자 심의 시 언급된 위원회 의견반영 및 세부사업 협의 : 위·수탁자

○ 위·수탁 계약서(안) 심사 : 법무담당관실

☐ 계약체결

○ 주요내용 : 계약목적, 위탁사무, 위탁기간 등

○ 계약체결 : ‘22. 12월 중

Ⅵ 향후 추진일정

○ 시의회(제295회 정례회) 동의 : ’22. 9월

○ 수탁기관 모집 공고 : ‘22. 10월

○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22. 11월

○ 위탁계약서(안) 심사 : ’22. 11월

○ 위·수탁 계약 체결 및 위탁사항 홈페이지 게시 : ‘22. 12월

○ 위·수탁 사무 개시 : ’23. 1. 1.